

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

제정 2023. 7. 4. 국립국어원 예규 제16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라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(이하 “국어원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②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청원업무 주관부서) ① 청원 사항의 제도와 규정 관리 등은 기획운영과장이, 청원의 접수·분류 및 위원회 운영 등 청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한다.

제4조(처리부서)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(이하 “처리부서”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

②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,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.

제5조(청원심의회 의 원칙) ① 법 제8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다.

제6조(청원심의회 의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은 어문연구실장이 되고,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국립국어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외부위원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립국어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(서기관) 또는 실무자로 한다.

제7조(청원심의회 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청원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「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」를 제출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
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
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의회 개최 요구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 종료 후,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,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)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·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 건	
일 시	. . .
검토의견	

○○○ 위원

(서명 또는 인)

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 건	
일 시	. . .
심의결과	

<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위원 >

구 분	성 명	심 의 의 견			서 명
		찬성 (심의결과 동의)	반대 (심의결과 반대)	비고	
위원장					
위원					

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1. 청원인

- 성명 :
- 생년월일 :

2. 청원 요지

-
-

3. 개최 이유

-
-

4. 요청 시기

-

5. 검토 의견

-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

-